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김태호·이달곤·윤한홍

이 용・조경태・김석기

윤창현 • 윤두현 • 김성원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 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 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간이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

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1억2천만원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	<u>6천만원</u>
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	

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	
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